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64

2020년 9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서윤기 의원(찬성자 42명)
나. 발의일자 : 2020년 7월 13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7월 14일
라. 상정결과 : 제29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년 9월 3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서윤기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문화소외계층’을 ‘문화취약계층’으로 함(안 제6조의2제1항제2호).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차별 및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용어 중 하나인 ‘문화소외계층’을 ‘문화취약계층’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시장은 관할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생 략) ②·③ (생 략)	제6조의2(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문화취약계층---------- ----------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1]에 따라 인권주류화, 공무원 인권감수성 제고, 협치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 인권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영향평가제도[2]를 도입·운영하고 있음[3].

---

1)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8조(인권영향평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인권영향평가(HRIA) :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법령, 계획, 정책, 사업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사전적으로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

3)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시행계획(정무부시장 방침 제3호, ’19.4.)

○ 서울시 인권담당관에서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자치법규 860개(조례631, 규칙229)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① 차별 및 인권침해, ② 기본권 보장 및 권리구제, ③ 시민참여 보장 등 3개 분야 9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자치법규 62개(조례 57, 규칙5) 96개 조항에서 개정사항을 도출하였음.

○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소외계층은 영어의 disadvantaged group 또는 marginalized group 등을 번역하여 사용된 용어로 최근에는 차별적 의미가 강하다는 의미에서 취약계층(vulnerable group)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은 사회·경제적·신체적 및 기타 조건으로 인하여 외적 개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동등한 혜택을 제공받을 기회로부터 배제되기 쉬운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 이 역시 차별적 느낌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나 대안용어가 없기 때문에 소외계층 대신에 취약계층을 사용하거나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으므로 '문화소외계층'을 '문화취약계층'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 각 실국에서는 시민참여 기반 인권도시 조성을 위해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용어를 개선하고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에서 권고하는 사항들을 반영하여 市 주요 정책 추진시 인권적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참고로 발의자인 서윤기 의원은 같은 내용 13건의 일부조례개정안(소외계층→취약계층)을 서울시 전 실국에 걸쳐 동시에 발의한 상황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윤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664

발의년월일 : 2020년 7월 13일

발 의 자 : 서윤기, 김동식, 박기재, 정진철, 김기대, 김제리, 봉양순, 임만균, 정재웅, 임종국, 양민규, 이정인, 유정희, 박기열, 오현정, 전병주, 이상훈, 김화숙, 황인구, 장상기, 오중석, 최 선, 채인묵, 장인홍, 이태성, 추승우, 이동현, 전석기, 노식래, 노승재, 김경영, 김희걸, 권순선, 문병훈, 김수규, 김광수, 유 용, 송도호, 최영주, 문장길, 최정순, 홍성룡, 김경우 의원(43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소외계층’을 ‘문화취약계층’으로 함(안 제6조의2제1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문화소외계층”을 “문화취약계층”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시장은 관할 지역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생 략) ②·③ (생 략)	제6조의2(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문화취약계층---------- ----------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